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200069]

www.ministop.co.kr

[정보공개서 최초등록 2008년 7월 29일]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19년 10월 25일]

[미니스톱]
정 보 공 개 서

한국미니스톱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19. . .

한국미니스톱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전화번호:02-2103-9500

팩스번호:02-2103-9667

개발기획팀 02-2103-969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1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9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4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6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51
별첨.1 재무상태표	53
별첨.2 포괄손익계산서	57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한국 미니스톱(주)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7.2.12.	1997.3.1.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법인등록번호	110111-1376139	사업자등록번호	116-81-6330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심관섭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마스다 코우이찌로우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아베토요아키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하마구치 요우스케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양영승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다카하시 카즈오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허 담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다카하시 카즈오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미야시타 나오유키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나카자와 미즈하루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쿠와사코 순지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고이즈미 요시오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훗타 마사시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후지모토 아키히로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최창빈	미니스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관섭	02-2103-9500	02-2103-966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미니스톱”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미니스톱	근처 길모퉁이에 잠깐 들리보는 곳이란 의미의 MINISTOP은 ‘멈춰서서 다음으로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 호	미니스톱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0014589 호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16년 ^{주1)}	270,709,263	176,601,249	94,108,014	167,727,777	-3,599,181	-2,548,644
2016년 ^{주2)}	288,919,653	192,220,387	96,699,265	1,172,172,113	3,421,141	2,474,621
2017년 ^{주3)}	300,296,040	201,203,661	99,092,379	1,185,290,172	2,615,415	2,221,001
2018년 ^{주4)}	290,176,366	189,945,595	100,230,771	1,163,694,864	4,646,353	1,684,872

주1) 12월 결산법인에서 2월 결산법인 변경으로 인한 2개월(2016. 1.1. ~ 2.29.)분.

주2) 2016년 결산분(2016. 3. 1. ~ 2017. 2. 28.)분

주3) 2017년 결산분(2017. 3. 1. ~ 2018. 2. 28.)분

주4) 2018년 결산분(2018. 3. 1. ~ 2019. 2. 28.)분

위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참조)

별첨.1 재무상태표 (23기, 22기, 21기, 20기)

별첨.2 포괄손익계산서 (23기, 22기, 21기, 20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5.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첨.1 재무상태표 참조바랍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심관섭	대표이사	2011.1~2012.3	한국미니스톱(주) 상품본부장	회사업무총괄
			2012.3~현재	한국미니스톱(주) 대표이사	
	아베 토요아키	이사	2015.1~2016.3	일본미니스톱(주) 동동경영업무부부장	관리총괄 (관리담당)
			2016.3~현재	한국미니스톱(주) 관리담당이사	
	하마구치 요우스케	이사	2016.3~2017.2	일본미니스톱(주) 제1상품본부상품부장	상품·기획개발총괄 (상품담당)
			2017.5~2018.2	한국미니스톱(주) 영업담당이사	
			2018.3~현재	한국미니스톱(주) 상품담당이사	
	양영승	이사	2016.3~2018.2	한국미니스톱(주) 영업지원본부장	영업총괄 (영업담당)
			2018.4~현재	한국미니스톱(주) 영업담당이사	
	나카자와 미츠하루	이사	2016.1~현재	일본미니스톱(주) 해외사업본부본부장	기타비상무이사
			2016.3~현재	한국미니스톱(주) 이사	
	후지모토 아키히로	이사	2017.~현재	일본미니스톱(주)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2018.4~현재	한국미니스톱(주) 이사	
	다카하시 카즈오	감사	2014 ~ 현재	일본미니스톱(주) 관리본부장 부	
			2014.3~현재	한국미니스톱(주) 감사	
	홋타 마사시	감사	2017.~현재	일본미니스톱(주) 관리담당 상무	
2017.10~현재			한국미니스톱(주) 감사		
한현준	지배인	2011.3~현재	한국미니스톱(주) 법무총무부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19년 2월 28일	5	5	73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2010. 5.17 출원 1991. 1.10 등록 2001. 4. 4 등록 2010.11. 8 등록	출원제40-1990-0004261 출원제50-2000-0010192 출원제50-2010-0007000 등록제40-0207968-000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1.1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2010. 5.17 출원 1991. 1.19 등록 2001. 4. 4 등록 2010.11. 8 등록	출원제40-1990-0004263 출원제50-2000-0010193 출원제50-2010-0007001 등록제40-0208405-000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1.19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1991. 3.30 등록 2001. 4. 4 등록	출원제40-1990-0004280 출원제50-2000-0010198 등록제40-0211968-000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3.30
 미니스톱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4.11.25 출원 2006. 4.12 출원 2006. 4.12 출원 1996. 7.22 등록 2006. 6.22 등록 2006. 9.30 등록	출원제41-1994-0009526 출원제51-2006-0000713 출원제56-2006-0006453 등록제41-0032369-000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6. 7.22.
 미니스톱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5. 4 출원 2000.12. 7 출원 1991. 9.26 등록 2001. 5.19 등록	출원제41-1990-0001434 출원제51-2000-0000917 등록제41-0014943-000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9.26.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 9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1-1990-0000344 출원제51-2000-0000916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8.13
		1991. 8.13 등록 2001. 5.19 등록	등록제41-0014589-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82 출원제50-2000-0010218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11.29
		1991.11.29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26989-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출원	출원제40-1990-0004281 출원제50-2000-0010211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7.25
		1991. 7.25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7446-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9 출원제50-2000-0010201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4.15
		1991. 4.15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2743-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8 출원제50-2000-0010214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9.30
		1991. 9.30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22587-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7 출원제50-2000-0010212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8.28
		1991. 8.28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20410-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6 출원제50-2000-0010203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4.30
		1991. 4.30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3336-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4 출원제50-2000-0010195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3. 5
		1991. 3. 5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0390-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3 출원제50-2000-0010213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9. 2
		1991. 9. 2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20707-0000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2 출원제50-2000-0010204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5.30
		1991. 5.30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4171-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1 출원제50-2000-0010205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5.30
		1991. 5.30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4172-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70 출원제50-2000-0010197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3.21
		1991. 3.21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1515-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69 출원제50-2000-0010196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3.21
		1991. 3.21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1514-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68 출원제50-2000-0010209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6.10
		1991. 6.10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4598-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67 출원제50-2000-0010194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2.21
		1991. 2.21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0076-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66 출원제50-2000-0010199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4. 2
		1991. 4. 2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2002-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65 출원제50-2000-0010208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6.10
		1991. 6.10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4597-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2000.12. 7 출원	출원제40-1990-0004264 출원제50-2000-001021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6.14
		1991. 6.14 등록 2001. 4. 4 등록	등록제40-0215046-0000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0. 2.16 출원	출원제40-1990-0004262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1. 4.30
		2000.12. 7 출원	출원제50-2000-0010202		
미니스톱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1991. 4.30 등록	등록제40-0213333-000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3. 1. 4
		2001. 4. 4 등록			
미니스톱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2012. 7.16 출원	출원제41-2012-0024105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2.12.11
		2013. 1. 4 등록	등록제41-0248442-0000		
미니스톱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2012. 7.16 출원	출원제41-2012-0024100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3. 1. 4
		2012.12.11 등록	등록제41-0246749-0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2012. 7.16 출원	출원제41-2012-0024102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2.12.11
		2013. 1. 4 등록	등록제41-0248443-000		
	상표 사용 및 대가 수수	2012. 7.16 출원	출원제41-2012-0024099	일본미니스톱 주식회사	2022.12.11
		2012.12.11 등록	등록제41-0246747-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미니스톱 가맹사업 현황

1. 미니스톱을 시작한 날: 1991년 7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0년 11월 7일)

2. 미니스톱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미원통상 주식회사	미니스톱	김교남	~1992.12.31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미원통상 주식회사	미니스톱	고두모	1993.1.1~1994.9.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대상교역 주식회사	미니스톱	김교남	1994.9.6~1995.12.1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대상교역 주식회사	미니스톱	이행기	1995.12.1~1996.2.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대상교역 주식회사	미니스톱	윤석용	1996.2.28~1997.3.2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대상교역 주식회사	미니스톱	공홍섭	1997.3.23~1997.12.5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대상교역 주식회사	미니스톱	공홍섭	1997.12.6~1998.7.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대상유통 주식회사	미니스톱	이명재	1998.7.15~2003.12.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미니스톱	이명재	2003.12.31~2004.12.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미니스톱	이상복	2005.1.1~2012.3.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관양동)

3. 미니스톱 업종

영업표지	업종	
	미니스톱	대분류
편의점		CVS / FF상품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미니스톱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17. 2. 28.			2018. 2. 28.			2019. 2. 28.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62	2,303	59	2,501	2,447	54	2,556	2,494	62
서울	416	379	37	403	377	26	392	364	28
부산	107	106	1	119	118	1	123	122	1
대구	31	31	-	42	42	-	47	47	-
인천	92	92	-	95	95	-	96	93	3
광주	183	180	3	182	178	4	171	168	3
대전	54	54	-	56	55	1	60	60	-
울산	64	64	-	63	63	-	69	68	1
경기	605	593	12	644	632	12	672	657	15
강원	94	93	1	104	103	1	109	108	1
충북	47	47	-	55	55	-	66	66	-
충남	120	117	3	144	140	4	157	153	4
세종	11	11	-	15	15	-	13	13	-
전북	137	137	-	145	143	2	149	149	-
전남	225	223	2	235	233	2	232	227	5
경북	61	61	-	79	79	-	86	86	-
경남	115	115	-	120	119	1	114	113	1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미니스톱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주3)}	계약 종료 ^{주2)}	계약 해지 ^{주1)}	명의 변경	연말
2016.2. ^{주4)}	2,131	41	9	5	28	2,158
2016 ^{주5)}	2,158	335	101	89	242	2,303
2017 ^{주6)}	2,303	313	71	98	230	2,447
2018 ^{주7)}	2,447	300	150	103	283	2,494

주1) 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 해지한 점포. (가맹→직영 인수점포 포함, 2018년 : 3점)

주2) 계약종료 : 가맹점에서 직영점 전환점포수 포함. (2018년 : 15점)

주3) 신규개점 : 직영점에서 가맹점 전환점포수 포함. (2018년 : 5점)

주4) 2016. 2. : 2016년 1월, 2월 자료임.

주5) 2016 : 2016년 3월 ~ 2017년 2월 자료임.

주6) 2017 : 2017년 3월 ~ 2018년 2월 자료임.

주7) 2018 : 2018년 3월 ~ 2019년 2월 자료임.

6. [미니스톱]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미니스톱]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미니스톱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18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19년 2월말 가맹점 수	2019년 2월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494	607,538	23,313	2,330,264	249,671	123,726	4,214	171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서울	364	674,313	30,315	2,041,202	126,480	238,145	9,358	24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부산	122	597,453	21,612	1,566,592	172,325	241,352	8,102	10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대구	47	513,260	17,824	1,174,199	65,676	269,076	9,294	2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인천	93	701,353	28,224	2,330,264	249,671	123,876	4,367	7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광주	168	632,001	22,144	2,157,250	90,962	220,130	8,018	4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대전	60	575,046	20,959	1,301,495	45,375	273,256	7,819	3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울산	68	565,035	18,883	1,120,331	61,071	149,038	7,211	6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경기	657	642,837	24,954	1,634,920	124,028	174,915	6,167	47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강원	108	500,270	17,272	1,032,237	68,733	144,868	5,123	11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충북	66	562,497	19,323	1,034,610	37,915	177,171	6,679	7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충남	153	535,190	18,637	1,007,301	47,652	123,726	4,214	14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세종	13	676,482	27,255	1,213,232	57,444	342,617	15,431	1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전북	149	527,251	18,197	1,070,338	79,331	235,509	5,450	9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전남	227	603,536	20,578	1,498,749	77,342	163,302	7,037	9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경북	86	495,124	14,416	903,025	42,857	169,569	4,660	12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경남	113	535,498	19,723	1,052,550	75,117	166,574	7,267	5점 제외 (6월 미만 및 휴점)
제주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1. 특히 전체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환산식 : 평균매출액} = \frac{\text{해당 점포의 연간 총매출 합계}}{\text{해당 점포의 연간 영업일수 합계}} \times 365 \text{ 일}$$

2. 다만, 2018년 9월 이후 영업을 시작하여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과 휴점 점포 171점의 매출액은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수 2,494개가 아닌 실제 2,32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매출액은 가맹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미니스톱 가맹점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1(방배동) 6, 7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심관섭	02-2103-9500	1,38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해당사항없음	○	○	○
호남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심관섭	062-450-9100	54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해당사항없음	○	○	○
영남	부산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거제동) 1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심관섭	051-930-2700	37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해당사항없음	○	○	○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18년에 미니스톱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0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829,804	11,829,804	-	
광고	소계		252,078	252,078	-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	
판촉	소계		11,577,726	11,577,726	-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세계속의 경기도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10. 가맹금 예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 등 제①항에 의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한국미니스톱(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주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니스톱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타입 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S타입/SL타입/ S-c타입/SL-c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3,475				
가맹비	7,700	계약 체결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개설과 오픈을 위해 소요된 비용	◎부가세 700 환급
상품예치금	15,000	개점일7일전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채권·채무정산	
잔돈준비금	500	개점일7일전	-		◎운영비용
제소전 화해비용	275	개점일7일전	반환되지 않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점포의 권리관계규명	◎S타입/S-c타입 제외

CL타입 / ML타입 / CL-c타입 / ML-c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3,475				
가맹비	7,700	계약 체결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개설과 오픈을 위 해 소요된 비용	◎부가세 700 환급
상품예치금	15,000	개점일7일전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채권·채무정산	
잔돈준비금	500	개점일7일전	-		◎운영비용
제소전 화해비용	275	개점일7일전	반환되지 않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의 점포의 권리관계규명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에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S 타입 / S-c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2,500			
(현금)가맹 보증금	2,50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1. 본사가 공급한 물품 등 (MS계정)정산. 2. 수도광열비 정산 등 3. 위약금 4. 기타	
담보목적물	50,00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1. 본사가 공급한 물품 등 (MS계정)정산. 2. 위약금 등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 중 선택

* 단, 점포의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SL타입/CL타입/SL-c타입/CL-c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전대차보증금+α			
현금담보	가맹본부가 임차한 임차보증금 (전대차보증금)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1. 본사가 공급한 물품 등 (MS계정)정산. 2. 수도광열비 정산 등 3. 위약금 4. 기타	
담보목적물	20,000~50,00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1. 본사가 공급한 물품 등 (MS계정)정산. 2. 위약금 등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 중 선택

ML 타입 / ML-c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2,000			
현금담보	22,000 이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1. 본사가 공급한 물품 등 (MS계정)정산. 2. 수도광열비 정산 등 3. 위약금 4. 기타	
담보목적물	30,000 이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1. 본사가 공급한 물품 등 (MS계정)정산. 2. 위약금 등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 중 선택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S타입 / S-c타입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0,200
가맹비	7,700
가맹보증금	2,500
가맹담보(물권담보가능)	50,000

* 물권담보의 경우 가맹담보 50,000천원 제외 (10,200천원)

SL타입 / CL타입 / SL-c타입 / CL-c타입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700 + 전대차보증금
가맹비	7,700
가맹보증금	전대차보증금
가맹담보(물권담보가능)	20,000~50,000


* 물권담보의 경우 가맹담보 제외

ML타입 / ML-c타입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9,700 + a
가맹비	7,700
가맹보증금	22,000 이상
가맹담보(물권담보가능)	30,000

* 물권담보의 경우 가맹담보 제외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가맹본부에서 회사투자형태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0평 기준)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7,000+a]	[900+a]			가맹본부 투자자산
내부전기	협력업체 외 3개사	3,000 이상	100 이상	공사개시 1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평방미터당 변동있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외 3개사	18,000 이상	600 이상	공사개시 1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평방미터당 변동있음
동력공사 및 증설	협력업체 외 4개사	2,000 이상	67 이상	공사개시 1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평방미터당 변동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부 서울:02-2103-9689 호남:062-450-9100 영남:051-930-2700	담당자 배정→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과약→상권분석→최적의 입지 도출→출점타당성 검토→점포소개→가맹희망자에게 동의여부를 구함→점포선택→가맹계약체결→교육→점포개점 ※ 가맹희망자가 점포선정 후 직접 의뢰하는 경우 : 담당자 배정→상권분석→출점타당성 검토→가맹상담→가맹희망자에게 동의여부를 구함→점포선택→가맹계약체결→교육→점포개점

또한, 당사는 계약 체결 7일 전 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점포개요, 예상매출범위, 경쟁점 현황 등)산정서”를 열람케 하고 본 계약이 체결 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교부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보건증 발급가능 및 만 20세 이상 등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발급가능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미니스톱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C타입’ 포함,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2)}	한국 미니스톱(주)	S,SL타입 매출총이익의 35~40%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로열티
		^{주1)} CL, ML타입 매출총이익의 50~75%				로열티 (매출총이익 구간별상이)
임차료	건물주	S타입 : 경영주 부담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한국 미니스톱(주)	SL타입 : 경영주 부담				
		CL타입:본부임차 비용의 1~15% ML타입:없음				
증집기 및 주방용기기 유지보수	협력업체 외 10	85.8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유지보수 비용	변동가능 (콜센터)
POS 시스템 유지보수	협력업체	5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유지보수 비용	변동가능
간판 유지보수	협력업체외 5	19.8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유지보수 비용	변동가능 (콜센터)
점포음원 제공서비스	협력업체	2.7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유지보수 비용	변동가능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외 4사	가맹본부부담	-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특별재고조사	협력업체 외 3사		21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변동가능 특별재고 조사시 지급
상품·폐기 로스	한국 미니스톱(주)	실발생비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가맹점주 재고관리
신용카드 수수료	각 신용카드사	매출액의 1.5%~2.6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카드사별 수수료차등
모바일문화 상품권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2.7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문화상품권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수도광열비	협력업체 외	사용금액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관리비	각 건물주 외	사용금액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통신비	협력업체	사용금액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소모품비	한국 미니스톱(주)	사용금액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전기안전 대행료	지역별 등록업체	실발생비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건물안전관리사 선임시 발생
화학세척비	협력업체 외 10		38.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변동가능
재고이자	한국 미니스톱(주)	실발생비		익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기말재고 대비적용
담배조합비	협력업체	(매입-반품)의 0.09%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OCB수수료	협력업체	적립	결제금액의 1% 및 적립 금액의 10%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로 로열티율로 지원
		할인	할인금액의 33.34% 및 할인 금액의 6.66%				
기프티콘 수수료	협력업체	교환금액의 5.5~8.8%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로 로열티율로 지원
TOP포인트 적립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0.01%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로 로열티율로 지원
세무수수료	협력업체 외 7사	71.5+a		익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조정료 별도 (연 1회)
티머니 수수료	협력업체	지불금액의 2%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로 로열티율로 지원
마이비 수수료	협력업체	지불금액의 2%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로 로열티율로 지원
캐시비 수수료	협력업체	지불금액의 2%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로 로열티율로 지원
M포인트 수수료	협력업체	할인금액의 50%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로 로열티율로 지원
방역서비스	협력업체		27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변동가능

청소용역비	협력업체외 1사	297 - 660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전체	
		264 - 572				매장	
		165 - 176				주방	
DDC수수료	협력업체	5.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신한마이 포인트수수료	협력업체	할인금액의 2%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M-TIC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2.64%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기프티M 수수료	협력업체	교환금액의 3.3%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위생점검 수수료	협력업체	88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변동가능 연1회이상	
기프팅금액권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2.64~6.0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기프팅 수수료	협력업체	교환금액의 3.3~6.6%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T-PAY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2.585%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한페이지불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2%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바통결제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1.43~2.64%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PAYCO 수수료	협력업 체	포인트	매출액의 2.42%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쿠폰					
카카오페이 수수료	협력업체	매출액의 2.53%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송금의무위반	한국 미니스톱(주)	미송금액의 연 20%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지체지연 패널티	위반한 날로 부터 반영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	매출액의 0.55%~1.98%	해당월 정산금공제	반환되지 않음	영업비용	수수료의 10% 지원	

주1) CL, ML타입 매출총이익별 상표사용료(로열티) 구간

매출총이익(단위 : 원)	매출총이익에 대한 로열티의 비율	
	로열티율(1) 24시간 미만	로열티율(2) 24시간
8,000,000원 까지	60%	50%
8,000,001원 ~ 10,000,000원 부분	65%	55%
10,000,001원 ~ 14,000,000원 부분	70%	60%
14,000,001원 부터	75%	65%

주2) 상표사용료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조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연간 3회 또는 필요시마다	문의: 영업지원본부 (02-2103-9560)
이익배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월에 대한 회계 처리 실시	1년 12회	문의: 가맹회계팀 (031-340-4255)
점포지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지도·조언에 따라 경영·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협력한다.	수시	문의: 영업지원본부 (02-2103-9560)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단, SL, CL, ML타입 (“-c“포함)의 경우 임대차계약 조건의 변경에 따라 전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소전화해비용이 발생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일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S타입에만 해당함)

귀하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당사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귀하가 한국미니스톱(주)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미니스톱”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국미니스톱(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먼저 ‘미니스톱점’을 폐점시키고 다음과 같이 점포, 설비, 기타 일체를 ‘미니스톱점’의 허가 및 권리의 사용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 ① 미니스톱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가맹본부에게 반환하고 미니스톱 점포를 표시하는 모든 간판, 시설물, 점포 내·외장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대여한 설비·집기 비품에 대하여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상회복 후 가맹본부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기로 합니다.
- ③ 점포의 모양을 변경하고 미니스톱이미지를 제거하여 미니스톱이미지와 그 유사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대행 시키거나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기로 합니다.

점포운영메뉴얼, 경영주메뉴얼, MINISTOP 상품진열지도서 등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종료 시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 등으로 종료수수료 500,000원(부가세별도)을 가맹본부에 지급합니다. 단, 재고조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용을 제외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미니스톱]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당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미니스톱]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미니스톱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당사의 “협력업체”와 거래하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MINISTOP점에서 “MINISTOP시스템”을 사용한 “COMBINATION STORE”의 통일적인 이미지 보전과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매입 및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력합니다.(“-c”타입은 CONVENIENCE STORE” 임.)

- 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성 및 신용을 고려하여 매입처와 매입상품을 추천합니다.
- 나)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에게 “MINISTOP시스템”에 의하여 상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시장에 적합한 상품의 구색과 판매 가격 체계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합니다.
- 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의 종류, 형태, 품질(신선도, 외관 등을 포함), 수량 또는 상품구색이 “MINISTOP시스템”과 “COMBINATION STORE”의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지도·조언을 합니다.(단, “-c”타입은 예외로 한다.)
- 라) 패스트푸드 및 조리가공에 대한 메뉴를 당사가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당사에 의하여 결정된 패스트푸드 및 조리가공품의 판매방법 및 체계에 대하여 지도·조언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의 MINISTOP점에서 판매하는 패

스트푸드 및 조리가공품에 위생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사는 즉시 판매중단 및 제품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 규정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얻어 패스트푸드를 취급하는 점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는 본 항의 각 호에 의한 당사가 추천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하거나 당사의 지도·조언과 다른 조건과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MINISTOP시스템”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MINISTOP시스템”의 유지 및 통일적인 이미지 보전에 질적으로 부합하고 양적으로 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위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필요하며, 휴게음식점 허가는 가맹점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청소년보호법상 판매제한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는 경제성 및 신용을 고려하여 매입처와 매입상품을 추천합니다.

나) 당사는 “MINISTOP시스템”에 의하여 상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지역시장에 적합한 상품의 구색과 판매가격 체계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합니다.

다) 당사는 상품의 종류, 형태, 품질(신선도, 외관 등을 포함), 수량 또는 상품 구색이 “MINISTOP시스템”과 “COMBINATION STORE”의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지도·조언을 합니다.(“-c”타입은 예외로 한다.)

라) 당사는 추천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하거나 당사의 지도·조언과 다른 조건과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MINISTOP시스템”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MINISTOP시스템”의 유지 및 통일적인 이미지 보전에 질적으로 부합하고 양적으로 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

절하지 못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편의점 자율규약 참여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상품연쇄화사업(편의점)	미니스톱	×

2) 영업지역의 설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거리)내에 “미니스톱”이라는 영업표지의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다 음 -

- ① 기존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② 기존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로 명의변경(양수도포함) 및 타입변경을 하는 경우
 - ③ 기존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 또한, 영업지역 내에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50m 내에서도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① 왕복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 ②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 ③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 ④ 24시간 영업하는 타 CVS의 가맹사업자가 동일 점포에서 미니스톱점으로 가맹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 ⑤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출점으로 인해 기존 미니스톱점 고객들의 신규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사유발생 → 영업지역변경(안)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완료	영업지역변경(안)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협의하여 서면 작성한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 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미니스톱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만 5년입니다.(단, ML타입은 만 3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12조 (ML13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5~29조 (ML26~30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17조 (ML18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2~24조 (ML23~25조)
○ [미니스톱]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1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니스톱점]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8조 (ML19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조 (ML13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6~29조 (ML27~30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17조 (ML18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2~24조 (ML23~25조)
○ [미니스톱]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순자산이 금일천칠백오십만원(₩17,500,000)이하로 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5일 이내에 보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4조 2항 (ML35조) (타입별 상이)
○ 송금을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태만히 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5일 이상의 기한을 주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25조 (ML26조)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3일 이내에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22조 (ML23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상호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본 계약서상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6조 7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미니스톱시스템을 사용한 콤비네이션 스토아의 품위, 신용을 현저하게 손상시켜 다른 미니스톱 가맹점들 뿐만 아니라 본부에 손해를 끼칠 경우	51조 1항 (ML52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채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미니스톱점의 건물, 임차보증금, 상품, 비품 등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임의 경매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40조, 51조1항 (ML41조, 52조1항)
○ 가맹점사업자의 어음거래 정지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 해산,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51조 1항 (ML52조 1항)
○ 가맹본부와의 합의없이 가맹본부의 추천 상품 이외의 상품을 매입 하거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① 상품구입처가 불분명한 경우(무자료거래 포함) ② 상품제조권자가 제조/판매의 권리에 대하여 법적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무허가자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인 경우 ③ 식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에 있어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④ 상품의 매입과 판매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⑤ 상품판매를 위해서는 특정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을 인허가 취득 전에 매입 판매하는 경우	23~27조 (ML24~28조)
○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51조 (ML52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51조 2항 (ML52조 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51조 (ML52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시장 ·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기존 계약의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	
○ 거래처의 사정으로 상품공급 · 배송 · 용역 등 당사의 의지와 다르게 경영환경 변동 발생시.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당사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및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편의점사업을 위한 이미지물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응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모두 당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당사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편의점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공급, 경영지도 및 이익배분 등 제반 편의점 운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6조 6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부서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용합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당사의 승인하에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 양수인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기획팀 (02-2103-9560)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및 가맹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양수인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미니스톱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동일한 업종의 타브랜드	불가함	문의: 영업기획팀 (02-2103-956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미니스톱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0:00 ~ 24:00 (24시간)	연중무휴	문의: 영업기획팀 (02-2103-95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미니스톱점” 영업단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의가 없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호 합의한 영업시간 외의 단축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정한 특수점포(일정기간 영업을 불가능한 점포)는 당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인시당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무가능한 시간 과 연령을 제한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영업사원의 주기적 방문에 의한 경영지도, 지원 및 관리	주 1회 이상 (변동가능)	각 지역 영업본부	모니터링담당자 용역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품질 관리				
친절도(서비스)	모니터링담당자가 점포방문시 전체적인 점포상태 등을 체크	1회/연 (변동가능)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미니스톱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본부전액부담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2017년의 경우 행사별로 가맹점사업자부담금 없음)		가맹본부전액부담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 서비스	OCB 수수료 (SK 플래닛)	타입별 로열티율 부담	적립	결제금액의 1% 및 적립 금액의 1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월 마감 후 익월 15일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할인	할인금액의 33.34% 및 할인 금액의 6.66%		
	M포인트	타입별	할인금액의 50%			

수수료 (현대카드)	로열티율 부담		
적립 수수료 (BC카드)	타입별 로열티율 부담	매출액의 0.01%	
신한 포인트 수수료 (신한카드)	타입별 로열티율 부담	할인금액의 2%	
T멤버십할 인수수료 (SKT)	타입별 로열티율 부담	매출액의 최대 10% 이내	제휴사 부담분 전액 점포 지원(월 마감 후 익월 15일 송금)

광고 및 행사에 대한 비용부담은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인카드·멤버십제휴서비스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영업팀과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에 의거하여 당사부터 전수 받은 “MINISTOP시스템”을 귀하의 MINISTOP점의 경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전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합니다. 귀하는 미니스톱시스템 및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본 가맹계약내용과 부수적인 계약내용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아니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MINISTOP점의 경영을 중단하게 된 후에도 당사에서 정한 비밀보존·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합니다. 비밀보존·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 비밀보존·유지의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관계법령 미준수에 따른 위약벌

귀하께서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아래의 금액을 위약별로 당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text{위약벌} = \text{평균로열티} \times \text{영업정지일수}$$

※ 평균로열티 = 처분 전 12개월간의 총 로열티 ÷ 365

단, 영업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을 시에는 오픈월을 제외한 영업 기간 동안의 로열티를 일수로 나눈 값.

2)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정보공개서 V.6. 또는 가맹계약서 51, 52조(ML타입 52, 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당사와 귀하는 손해배상(잔존기간에 대한 기회이익 포함)으로서 다음 각항에 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하기로 합니다.

1. 제51조(ML타입 52조)에 의한 합의 해지 및 당사의 계약해지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합니다.

가. 귀하의 MINISTOP점의 최종월을 제외한 직전 12개월분(영업기간이 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점월 및 최종월을 제외한 영업기간분)을 평균한 매출총이익(이하 '평균매출총이익'이라 한다)의 3개월분 상당액에서 영업월수에 대하여 월평균매출총이익의 1%를 공제한 금액

$$\text{손해배상금} = \text{평균매출총이익} \times 3\text{개월} - \text{평균매출총이익} \times 1\% \times \text{영업월수(월)}$$

나. 당사가 귀하의 MINISTOP점의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에 투자한 잔존가 기준에 의한 제반비용

다. 시설(장비)·인테리어 철거비용 일체(실비정산)

2. 가맹계약서 52조(ML타입 53조)에 의한 귀하의 계약해지의 경우는 본조 1항의 가호를 손해배상금으로 합니다.

3. 본조 제1항의 가호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영업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손해배상금을 실제 산출금액에도 불구하고 금 삼천만원(₩30,000,000)으로 합니다.

4. 본조 각항에 정한 것과 관계없이 귀하가 정보공개서 V. 10. 비밀보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본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당사와 귀하께서는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에 추가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가맹계약 54조 내지 58조(ML타입 55 내지 59조)의 계약종료시의 조치를 취하기를 지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지체 1일에 대하여 평균매출총이익의 1%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산출금액에도 불구하고 지체 1일에 대하여 금이십만원(₩200,000)의 손해배상금을 당사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합의해지에 의한 손해배상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을 상호협약하에 중도에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취지를 3개월 전 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예고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S, SL CL>

가. 개점일 이후 3년 미경과시

손해배상금 = 평균로열티 × 6개월

나. 개점일 이후 3년 경과에서 4년 미경과시

손해배상금 = 평균로열티 × 4개월

다. 개점일 이후 4년 경과시

손해배상금 = 평균로열티 × 2개월

<ML>

손해배상금 = 평균로열티 × 3.6개월

여기서 평균로열티라 함은 귀하의 미니스톱점의 최종월을 제외한 직전 12개월분 (영업기간이 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점월 및 최종월을 제외한 영업기간분)

을 평균한 로열티를 의미합니다.

※ 평균로열티 = 최종월 전 12개월간의 총 로열티 ÷ 12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미니스톱점포에 투자한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 일체를 손해배상금 외에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송금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MINISTOP점에 대한 매일(당일 24시간)의 매출액을 익일(일요일,공휴일, 기타 은행 휴일의 경우는 은행 영업개시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다.’는 송금의무를 위반하여 그 이행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1일 미송금액의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통상의 지불방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 MINISTOP본부계정에 정산되는 것으로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문의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상담시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없음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체결 최소 1일전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및 예상매출액산정서교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부 받은 후 14일 이후	IV. 참조
가맹금 예치	-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체결	계약체결 또는 가맹비 입금일 중 빠른 날	없음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8~15(4일)	IV.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0~10(10일)	IV. 참조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0~10(10일)	IV. 참조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14일)	IV. 참조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IV. 참조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S /SL / CL / ML 타입('c'타입 포함)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가맹점사업자는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24시간 미만 운영	24시간 운영			
장기 계약지원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을 통한 수익창출	CL타입 오픈 후 37개월차부터 혜택		CL타입 오픈 후 37개월차부터 혜택	매출총이익의 3% 지원	계약기간 미준수시 기지급된 장기계약 장려금회수
가맹점 최저수입 보조지원	정상적인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입이 저조하여 최저수입을 보조하는 제도	가맹점수입 연간4,800만원 미만 (단,CL,ML 타입 4,200만원 미만)	가맹점수입 연간7,000만원 미만 (단,CL,ML 타입 6,000만원 미만)	가맹계약 기간	가맹점최저수입보조 지원금은 한도기준액을 초과 하지 못함 (한도기준액:로열티-전기료지원금-매출장려금-특별판매촉진장려금-특별계약장려금-FF활성화장려금-영업장려금)	가맹계약서 35조(단, ML타입 36조)참조
FF매출 장려금2	다중복수점 점포에 대한 지원장려금	FF매출의 월매출 비중이 8% 이상인 경우 (단, 당월 FF매출액이 1,500천원이상 일것)		오픈월 제외 6개월	50만원	다중복수점에 한함
폐기 지원금	패스트푸드상품 및 일배상품/유제품/빵/야채/청과/계란/두부 상품군의 영업기회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최저수입보조지원금을 받는 점포에 한하며 폐기원가액이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계약 기간	월 30만원	점포POS 시스템으로 폐기등록하지 않거나 최저수입 보조지원을 받지 않는 영업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폐기 지원금2	오픈 및 전환점 폐기지원금	오픈 및 전환점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개월내 한시 적용	25만원 한도	오픈 및 전환일로부터 지원 상품별 폐기지원일 상이
FF1 활성화 장려금	핫디저트상품 (FF쇼케이스상품, 오뎅) 전품목	가맹점 오픈 후 지원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 계약기간	해당품목 실제 폐기 발생 등록분의 50%	100,000원 한도 내(月) 대두유,

	날개 식재에 한하여 폐기지원			폐기 지원	소스, 봉투 등 제외
FF2 활성화 장려금	일배상품 (도시락, 주먹밥류, 샌드위치, 김밥, 햄 버거, 면, 샐러드)에 대하여 폐기지원	가맹점 오픈 후 지원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 계약기간	해당품목 실제 폐기 발생 등록분의 50% 폐기 지원	150,000원 한도 내(月)
매출 장려금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매출총이익 1,100만원~1,300만원 : 20만원 1,300만원~1,500만원 : 30만원 1,500만원~1,700만원 : 50만원 1,700만원~1,900만원 : 80만원 1,900만원~: 100만원	가맹계약 기간	매출 총이익에 따라 20만원 ~ 100만원 차등 지급	S타입에 한하며 가맹계약 위반시 장려금이 중단될 수 있음
특별 판매촉진 장려금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매출총이익 1,200만원~1,400만원 : 50만원 1,400만원~1,600만원 : 75만원 1,600만원~1,800만원 : 100만원 1,800만원~2,000만원 : 150만원 2,000만원~: 200만원	가맹계약 기간	매출 총이익에 따라 50만원 ~ 200만원 차등 지급	S타입에 한하며 가맹계약 위반시 장려금이 중단될 수 있음
전기료	점포전기료 실사용량	전기료 실사용량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계약 기간	실사용량기준 금액의 50%지원	
신용카드 사용 장려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지원	없음(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계약 기간	신용카드수수 료의 10%	365일 연중 운영 및 근무복장 착용점에 한함
각종 수수료 지원금	각종 수수료에 대한 지원	없음(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계약 기간	각종 수수료 ×로열티율 금액지원	타입별 로열티율로 지원
송금	본부 송금시	없음(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	본부송금수수	

수수료 지원금	발생된 수수료에 대한 지원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기간	료 실비지원	
용기면 지원금	용기면의 환경비용발생에 대한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계약 기간	용기면 매입금액 × 지원율	
기타 장려금	영업/상품 행사 장려금 등	없음(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계약 기간	주간공문안내	수시
부도수표 지원금	부도수표 손실액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위반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맹계약 기간	10만원권에 한함	발생시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개선요청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지원본부 (02-2103-956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개선요청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영업지원본부 (02-2103-956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미니스톱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를 위하여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음과 같이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대출명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형태	신용제공조건
신한은행 프랜차이즈론	신한은행	최대 5,000만원	신용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체 신용등급분류 기준 적합자 - 귀하의 신용에 따라 대출조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론	우리은행	최대15,000만원	신용대출	
하나은행 프랜차이즈 가맹점대출	하나은행	최대 5,000만원	신용대출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미니스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서비스, 종업원 교육 등 FF가공 및 POS 업무 등	집단강의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상품매장공부회 등	집단강의	연 1회 실시 (변동가능)	선택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미니스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4일	가맹비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없음	매년 선택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반드시 가맹점계약자가(법인인 경우는 경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8조(ML타입 19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법무팀(02-2103-953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p>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p>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별첨 2. 포괄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